

# 검 토 보 고 서

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936호,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 계획안」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## II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‘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’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·조성하기 위함
- 나.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교육부에서 보통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나, 사전기획용역,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로, 당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연도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함
- 다. 교육환경개선사업은 '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교육환경개선 기금 예치금 3,184억원중 '22년도에 냉난방개선과 석면해소 사업 시설비 2,317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
- 라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의 규정에 따라 「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하여

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기금 개요

- 동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‘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’의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·조성하고자 기금을 운용하는 것임

〈표 2-1〉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명	2021년도말 조성액 (A)	2022년도기금운용계획		2022년도말 조성액 (B=A+㉠-㉡)
		수입㉠	지출㉡	
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	318,411	260,456	231,702	347,165

- 동 기금의 '22년도 말 조성액은 3,471억 6,500만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(3,184억 1,100만원) 보다 9.0%, 287억 5,400만원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임

## 3. 검토내용

### (1) 기금 수입계획

- 동 기금 운용계획안중 **수입계획**의 경우, 금년 수입액(3,184억 1,100만원)보다 2,604억 5,600만원 증가한 총 5,788억 6,7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제출한 것으로
  - ①**교육비특회계전입금**은 금년도(3,184억 1,100만원)보다 △603억원 1,100만원 감액한 2,581억원으로, ②**예치금회수**는 3,184억 1,100만

원 순증하고, ③예금이자수입은 23억 5,600만원 순증하여 수입계획한 것임

〈표 2-2〉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과목				2022년 수입액 (A)	2021년 수입액 (B)	증 감 (A-B)
장	관	항	목			
합 계				578,867	318,411	260,456
내부거래				258,100	318,411	△60,311
		전입금		258,100	318,411	△60,311
		전입금		258,100	318,411	△60,311
			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258,100	318,411	△60,311
기타				318,411	-	순증
		예치금회수		318,411	-	순증
		예치금회수		318,411	-	순증
			예치금회수	318,411	-	순증
자체수입				2,356	-	순증
		이자수입		2,356	-	순증
		이자수입		2,356	-	순증
			예금이자수입	2,356	-	순증

(2) 기금 지출계획

○ **지출계획**의 경우에도, 수지균형에 따라 금년도 지출계획액(3,184억 1,100만원) 보다 2,604억 5,600만원 증가한 총 5,788억 6,700만원을 지출 계획하여 제출한 바,

- ①**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**은 일선학교의 냉난방기 개선 및 석면해소에 지출하고자 시설비 2,317억 200만원을 신설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,

- 교육환경개선중 냉난방기 개선으로 799억 800만원(356건), 석면해소로 1,517억 9,400만원(184건) 총 2,317억 200만원(540건)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
- ②예비비 및 기타는 예치금으로 3,471억 6,5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

〈표 2-3〉 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2022년 지출액	2021년 지출액	증 감
합 계					578,867	318,411	260,456
유아및초중등교육					231,702	-	순증
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					231,702	-	순증
교육환경개선시설					231,702	-	순증
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					231,702	-	순증
시설비					231,702	-	순증
예비비					347,165	318,411	28,754
예비비및기타					347,165	318,411	28,754
예비비및기타					347,165	318,411	28,754
내부유보금					347,165	318,411	28,754
예치금					347,165	318,411	28,754

(3) 기타 검토

## 1) 시설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필요

-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는 “기금의 용도”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가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 - 동 기금은 기금재원의 적립을 위한 여유재원적립 이외에는 기금을 통해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에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음
- 더욱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의하면,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①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, ②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, ③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로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 바,
  - 만일, 조례를 준수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재무활동으로 수정할 경우에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가 정하는 전출조건이 ②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경우, ①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
  -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처럼 냉난방기 개선 및 석면해소를 위한 시설비(2,317억 200만원)가 조례 제4조로 정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안중 지출계획한 시설비의 경우, 조례가 “기금의 용도”를 직접지출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없다는 점에서 지출계획한 시설비를 기금이 직접지출할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

- 그러므로 동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출계획한 시설비(2,317억 200만원)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“기금의 용도”를 준수하기 위해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을 통해 시설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이후, 시설비를 신규 편성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## 2) '예치금' 에 대한 사업별 예산구조 수정 필요

- 동 기금의 경우, 정책사업 '**예비비 및 기타**' 의 세부사업중 '예치금'을 신설하여 3,471억 6,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
- **예치금**은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- 그러나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지출계획중 '분야·부문'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,
  -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정책사업에 '**재무활동**'을 신설하고,
  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는 '**재무활동**'의 하위범위로 **보전지출(예치금)**이 해당되기에 예치금 항목은 '**예비비 및 기타**'가 아닌 '**재무활동**'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**재무활동**의 하위 단위사업으로 '**보전지출**'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예치금의 역할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「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'**보전**

지출'이 신설 되도록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-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적합한 사업별 예산구조에 부합하여 지출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매년 개정되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기준을 검토하고, 제도가 미흡할 경우 편성전 개선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

〈표 2-4〉 예산구조 수정 필요내역

지출계획 (제출안)						지출계획 (수정의견)					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
[160]예비비						[050]교육					
[161]예비비						[054]교육일반					
[01]예비비및기타						[03]재무활동					
[01]예비비및기타						보전지출					
				예치금						예치금	
				예치금						예치금	